

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
제264회 임시회 (2023. 10. 17.)

망원유수지 풋살장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

검 토 보 고 서



행정건설위원회

전문위원 권하나

망원유수지 풋살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검 토 보 고

1. 제출경위

- 가. 의안번호: 23-111
- 나. 제 출 자: 마포구청장
- 다. 제출일자: 2023년 9월 26일(화)
- 라. 회부일자: 2023년 10월 6일(금)

2. 제출사유

망원유수지 풋살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 운영하고 있는 망원유수지 풋살장 운영 사무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계약을 하고자,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제2항에 따라 마포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민간위탁의 내용

1) 위탁운영 시설현황

위	치	마포구 월드컵로25길 190(망원동)
현황	면적	990㎡
	시설	풋살장(1면 800㎡), 조명탑, 관리실 1동, 그늘막 2동, 벤치8개, 골대 2개

2) 위탁기간: 3년 (2024. 1. 1. ~ 2026. 12. 31.)

3) 위탁사무 범위: 망원유수지 풋살장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

4) 소요예산: 비예산

5) 수탁기관 선정방법: 기존 수탁업체와 재계약

나. 추진 일정

- 1) 2023. 9. : 성과평가 실시
- 2) 2023. 10. ~ 11. : 재계약 심사 및 선정 결정
- 3) 2023. 12. : 협약 체결
- 4) 2024. 1. : 위탁사무 시작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조
- 2) 「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15조
- 3)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

5. 검토의견

- 본 동의(안)은 현재 “마포구체육회”가 위탁·운영하고 있는 “망원유수지 풋살장”의 수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 예정임에 따라, 동일한 수탁기관(마포구체육회)과 “재계약(’24.1.1. ~ ’26.12.31. (3년))”을 추진하기 위해 제출되었음.
- 다만, 본 동의(안)은 일반적인 민간위탁 “재계약”이 “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의회 동의를 갈음”(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제2항 본문) 하는 것과 달리,
- “해당 사무(망원유수지 풋살장 운영)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면서 구

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계약”(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제2항 단서1))에 해당하여 “재계약”임에도 구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함.

- 본 동의안에서 민간위탁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무는 ‘망원유수지 풋살장’의 운영·관리 업무로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1항 제3호 및 제4호2)에 해당되어 민간위탁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며,
- 민간위탁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의 고비용·저효율을 개선하거나,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과 필요성에 의해 채택하고 있어,
- 풋살장을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인건비·운영비 등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풋살장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운영활성화 및 체육진흥 도모 측면에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서 노하우를 활용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됨.

1)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5조(의회 동의 및 보고)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1.5.6, 2023.3.9.>

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1.5.6.>

③ 1년 단위 이하의 반복적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한다. <신설 2021.5.6.>

2)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 등)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- 망원유수지 풋살장은 설립초기부터 현재까지 마포구체육회가 위탁 계약을 통해 수익창출형 민간위탁³⁾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.

〈 망원유수지 풋살장 민간위탁 추진 연혁 〉

차수	계약기간	수탁기관	방식
1차	2017. 7. 1. ~ 2018. 8. 31.	마포구체육회	최초
2차	2018. 9. 1. ~ 2020.12.31.	마포구체육회	재계약
3차	2021. 1. 1. ~ 2023.12.31.	마포구체육회	재위탁

- 그동안 운영실적을 살펴보면, 총 운영횟수 대비 예약률은 2021년 70%, 2022년 67%, 2023년 8월 현재 66% 예약률로 보통 혹은 양호한 수준임.

〈 최근 3년간 망원유수지 풋살장 운영 실적 〉

구 분	위탁료(원)	예약률(%)	이용인원(명)
2021년	4,978,980	70	12,580
2022년	7,030,000	67	17,750
2023년(8월)	5,805,000	66	10,480

- 이와 더불어 동 민간위탁 동의(안)의 재계약 대상 수탁기관(마포구체육회)은 위탁사무 성과평가⁴⁾(결과 88점/기준 60점이상)가 재계약 가능 점수 기준을 상회함.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(p.49)」

〈반드시 재위탁 공개모집을 해야 하는 경우〉

- 성과평가 결과 **60점 미만**일 때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금지

3) 자립형(舊 수익창출형) 민간위탁: 마포구의 예산지원 없이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위탁사무로서,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을 일정한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법인·단체 등에게 맡겨 그 명목과 책임 하에 운영하도록 하는 것

4) 망원유수지 풋살장 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

- 이와 같이 살펴볼 때 동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은 조례에서 정한 민간 위탁 대상사무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, 위탁기간도 조례 규정인 3년 이내⁵⁾를 준수하는 등 상위법이나 관련 조례에 어긋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, 최근의 현장 확인 지도·점검 시 결산보고서 제출, 인사·복무 등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, 회계서류 작성 및 예산집행규정 준수 등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었는 바, 이러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소관부서의 철저한 관리·감독이 요구됨.
- 향후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정기적이고 철저한 점검·평가를 통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.

5) 제13조(협약체결 등)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

붙임 1

재위탁·재계약 민간위탁 추진절차(구의회 동의)

구 분	재위탁(공개모집)	재위탁(수의협약)	재계약
① 재위탁·재계약 추진계획 수립	민간위탁 지속필요성(시행사무 적정성 심의), 공개경쟁 가능성, 수탁가능업체, 재계약 가능 여부 등 사전 조사 위탁사무 내용, 기간, 비용, 수탁자 선정방법 등 결정		
↓	↓		
② 구 의 회 동 의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display: inline-block;">구의회 동의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→ 의회 동의 받은 이후 6년 경과 마다 의회 동의 필요 ▶ 조례 §6① 의회 동의안 제출 ▶ 1년 단위 이하의 반복적 자치사무 → 구의회 동의 배제 		
↓	↓		
③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	-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display: inline-block;">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수탁기관 적정성 심의 ▶ 수의협약 근거사유 심의 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display: inline-block;">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수탁기관 적정성 심의 ▶ 성과평가 결과 심의 ▶ 시정요구 결과 반영 ▶ 재계약 적정성 심의
↓	↓		
④ 수탁기관 선정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display: inline-block;">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수탁기관 적격자 선정 	-	
↓	↓		
⑤ 재위탁·재계약 협약체결	재위탁·재계약 협약 체결 (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 한하여 90일 범위에서 위탁기간 일시 연장)		
↓	↓		
⑥ 위탁사무 인계인수 등	위탁사무와 시설 인계인수, 사무편람 작성과 비치 등		
↓	↓		
⑦ 사후관리와 성과평가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 지도·점검(감독), 감사: 필요 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에 한해 매년 2회(반기별 1회) 이상 ▶ 성과평가: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실시 ▶ 재위탁·재계약: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수탁기관 선정 ▶ 재계약: 지도·점검에 따른 시정결과와 성과평가 결과 반영 		

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

제9조(체육시설의 위탁 운영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■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

제4조(체육시설 관리·운영) ① 체육시설은 구청장이 관리·운영을 한다. 다만,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15.4.16>

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체육경기대회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, 공정한 이용기회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15조(운영의 위탁) 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또는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②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,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. <개정 2015.4.16>

③ 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, 위탁의 연장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15.4.16>

■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 등)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다음

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.

1.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
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
3. 경제적 효율성
4.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활용 가능성
5. 성과 측정의 용이성
6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7.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 여건 등

제5조(의회 동의 및 보고)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(이하 “구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1.5.6., 2023.3.9.>

-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1.5.6.>
- ③ 1년 단위 이하의 반복적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한다. <신설 2021.5.6.>

제6조(민간위탁 동의안 등) ① 제5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위탁사무명
2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3.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
4. 위탁시설 개요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)
5. 민간위탁기간
6. 수탁자 선정방식
7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8.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9.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

② 제5조제2항에 따른 재위탁 또는 재계약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3.9.>

1. 인적·물적 현황
2. 예산의 지원과 집행 내역

3. 위탁 조건의 이행 수준
 4. 감사 및 감독상의 지적사항
 5. 사건·사고 현황
 6. 성과평가결과서
 7.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결과
- ③ 구청장은 구의회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. 다만, 재계약·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제13조(협약체결 등) ① 구청장은 사무를 위탁할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1.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
 2. 위탁기간
 3. 위탁사무 및 그 내용
 4.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 5. 협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조치사항
 6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
- ③ 구청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.

제21조(성과평가)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외부기관의 성과평가를 받는 경우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.

-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

제22조(재계약·재위탁 등)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·재계약 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.

-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제18조의 지도·점검에 따른 시정결과와 제21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.